

#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 안 번호	2363
-----------	------

2025. 02. 25.  
주택공간위원회

## I. 심사경과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02. 03. 고광민 의원 발의
2. 회부일자: 2025. 02. 06.
3.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8회 임시회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 (2024. 02. 25. 상정·의결)

## II. 제안설명 요지 (고광민 의원)

### 1. 제안이유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4조제2항의 개정사항('24.3.19.)을 반영하여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를 수정함.
- '서울특별시 공간정보통합체계' 및 '도시기본공간정보'를 정의하여 현행 추진 업무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간정보협의회' 설치 및 기능을 추가하여 서울시 공간정보 구축·관리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에 상위법령의 기재를 명확히 함(안 제1조)
- 나. ‘관리기관’의 범위를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통합체계’ 및 도시기본공간정보를 정의하여 조례 이해도를 높임(안 제2조)
- 다. 공간정보협의회 설치와 기능을 규정하여 서울시 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을 뒷받침함(안 제9조의2)
- 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4조제2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활용하려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14조)
- 마. 수수료 규정을 현행화 함 (별표 삭제)
- 바. 기타 자구 수정(안 제3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 Ⅲ. 검토보고 요지 (윤은정 수석전문위원)

### 가. 개요

- 이 개정조례안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서울시가 현재 추진 중인 업무의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 <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 >

조항(안)	주요 개정사항
제1조(목적)	· 상위법령 기재를 명확히 함
제2조(정의)	· (제5호) 관리기관의 범위를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
	· (제10호) 서울특별시 공간정보통합체계 정의 신설

조항(안)	주요 개정 사항
	· (제11호) 도시기본공간정보 정의 신설
제3조(적용범위)	· 자구 수정
제6조(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	· 자구 수정 (규칙 위임)
제8조(공간정보 표준 준수)	· 자구 수정
제9조(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 자구 수정
제9조2(공간정보 협의회 설치 및 기능)	· 공간정보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신설 (서울시 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 및 운영을 뒷받침)
제10조(중복투 자방지)	· 자구 수정 (법령 일치)
제14조(공간정보 제공)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4조2항 개정사항 반영 수정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활용하려는 자의 범위 확대)
제15조(수수료)	· 자구 수정 (관련 법령 규정 준용)
별 표	· 삭제 (관련 법령 규정 준용)

## 나. 조문별 검토

### (1)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제5호는 “관리기관”의 범위를 현행 법령<sup>1)</sup>과 동일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소속 행정기관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을 삭제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검토보고서 붙임<sup>1</sup> 참고, 이하 “공공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임.
- 이는 지난 ‘23년 8월 국가공간정보 수시 보안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검토보고서 붙임<sup>2</sup>)인 “관리기관의 범위가 법과 상충되는 사항”을 보완하여 법에서 정한 관리기관과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을 말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 : 전기통신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송유관 설치자관리자, 집단에너지 사업자

- 다만, 현행 조례에서 관리기관이 서울시에 제출해야 하는 사항(사업별 시행계획, 공간정보 목록정보)<sup>2)</sup>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에 따른 공공기관은 정부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이므로 서울시의 관리·감독 권한 밖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안에서 이를 제외할 필요가 있겠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뜻은 ----- -----.	제2조(정의) (개정안과 같음)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1. ~ 4. (개정안과 같음)
5.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민간기관을 말한다.	5. ----- ----- ----- ----- <u>자치구,</u> ----- <u>「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u> ----- ----- ----- ----- ----- ----- ----- ----- -----.	5. ----- ----- ----- ----- <u>자치구,</u> ----- ----- ----- ----- ----- ----- -----.

- 안 제2조제10호(신설)는 “서울특별시 공간정보통합체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서울시가 2003년부터 구축·운영중인 “통합공간정보시스템(SDW)”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명칭을 법상 용어<sup>3)</sup>와 통일

2)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5조(시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업별 시행계획을 매년 8월 31일 전까지 시 공간정보 업무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11조(공간정보 목록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영 제2조의 민간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목록정보를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u>&lt;신 설&gt;</u>	제2조(정의) ----- 뜻은 -----. 10. “서울특별시 공간정보통합체계”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체계를 통합 또는 연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구축·운영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성 있게 조정한 것임.

< 공간정보 표준분류체계에 따른 데이터 목록 분류표 >

대분류(14종)	중분류(45종)
국토관리·지역개발	토지,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 경계, 건물·시설, 수자원, 부동산, 산업단지
도로·교통·물류	도로, 교통, 철도, 항공·공항, 해운·항만
환경·자연·기후	환경보호, 자연, 기후
농림·해양·수산	농업·농촌, 임업·산촌, 해양·수산·어촌
산업·중소기업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재난방재·공공안전	재난방재, 공공안전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문화재, 관광, 체육
교육	교육시설, 평생·직업교육
보건·의료	보건의료, 식품의약품안전
사회복지	사회복지, 노동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지방행정
과학기술·통신	과학기술, 정보통신
통일·외교·국방	통일, 외교, 국방
지도	영상, 고도, 기준점, 기타

- 서울시의 개별부서들은 소관 업무의 필요한 다양한 종류의 공간정보<sup>4)</sup>

3)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란 제19조제3항의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국가공간정보체계를 통합 또는 연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를 생산하고 관리하며, 이 공간정보들을 “서울도시공간포털”, “스마트서울맵”, “S-MAP” 등 41개 시스템(검토보고서 붙임3)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데, 공간정보의 중복구축을 방지하고, 업무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통합공간정보시스템(SDW)”를 구축하여 운영 중임.

-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공간정보통합체계”의 운영 및 관리 방안에 관하여 안 제9조의2에 따른 협의회에서 자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안 제2조제11호(신설)는 “도시기본공간정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 설>	제2조(정의) ----- 뜻은 -----.  11. “도시기본공간정보”란 주소·경계· 기반시설·지형지물 등 도시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공간정보로 시장이 정하는 주요 디지털 공간정보를 말한다.

- 서울시는 현재 ‘통합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제공 중인 약 850종의 공간정보 중 ▲작은 변화로 수시 갱신 및 유지관리 필요한 정보(건물, 노상주차장 등), ▲다수 시스템에 연계되는 정보(행정구역, 도로구간, 하천경계 등), ▲도시개발 등을 위한 기본 규제 정보(용도지역, 용도구역 등) 등 15종을 선정하여 “도시기본공간정보”로 지칭하고 있음<sup>5)</sup>.

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5) 서울시는 2018년 주요 공간정보에 대해 별도로 관리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자체 연구와 자문, 부서간 회의를 통해 ▲작은 변화로 수시 갱신 및 유지관리 필요(건물, 노상주차장, 중점경관관리구역 등), ▲서울시 공간정보 시스템에서 자주 활용(행정구역, 도로구간, 하천경계 등), ▲도시개발 등을 위한 기본 규제 정보(용도지역, 용도구역 등) 등 15종의 공간정보를 선정하였음.

-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 인한 수요((예) 이태원, 시청역 사고 등으로 인한 보도면 공간정보))를 고려할 때, “도시기본공간정보”의 추가 선정이 필요해 보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그 선정 등의 사항을 안 제9조의2에 따른 협의회에서 자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안 제6조)

- 안 제6조는 전담조직인 ‘디지털도시국 공간정보과’의 업무를 이미 규정되어 있는 시행규칙 제5조6)로 위임하는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 ----- ----- ----- ----- 하고, 관련 업무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 다만,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업무내역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상 해당부서(공간정보과)의 업무분장 사항(검토보고서 붙임1) 간의 정합성 등을 검토하여 두 시행규칙의 조문 정비가 필요해보임.
- 아울러, 시행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례 조문에 오기 등은 조속히 개정하여야 할 것임7).

출처: 서울시 통합공간정보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_2024.07. 공간정보담당관

- 6)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전담조직) 조례 제7조에 따른 전담조직은 별도로 신설하거나 해당 관리기관의 정보화 업무 총괄부서에 두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간정보체계 구축·관리의 총괄 및 조정
  2. 공간정보체계 구축·관리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3. 공간정보체계 관련 전산장비(H/W, S/W, 네트워크, 응용프로그램 등) 운영
  4. 공간정보체계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5. 공간정보 관련 업무의 발굴·개발
  6.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책임자 지정
  7. 공간정보의 보안 및 표준화 관련 업무
- 7) “조례 제7조에 따른 전담조직” → “조례 제6조에 따른 전담조직”

### (3) 공간정보협의회 설치 및 기능(안 제9조의2)

- **안 제9조의2(신설)**는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등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고, 자문의 범위, 여비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면서 협의회<sup>8)</sup>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임.
- 협의회는 조례상 근거를 둔 상설위원회가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적용대상<sup>9)</sup>으로, 설치 목적,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존속 기한 등을 규칙으로 위임하였음<sup>10)</sup>.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사안인 위원의 구성과 존속기한(5년 이내) 등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겠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9조의2(공간정보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구축·관리·활용 등을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간	제9조의2(공간정보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개정안과 같음)

8)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1조(협력체계 구축)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를 구축·관리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관리기관 상호 간 또는 관리기관과 산업계 및 학계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9)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10)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p>&lt;신 설&gt;</p>	<p><u>정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u></p> <p>② <u>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도시기본공간정보 선정 및 갱신에 관한 사항</u></li> <li>2. <u>서울특별시 공간정보통합체계 운영 및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u></li> <li>3. <u>제10조제2항에 따른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전검토 사항</u></li> <li>4. <u>그 밖에 공간정보의 구축·관리·활용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li> </ol>	<p>② (개정안과 같음)</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③ <u>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④ <u>협회의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u></p>
<p>&lt;신 설&gt;</p>	<p>③ <u>협의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p>⑤ (개정안 제3항과 같음)</p>
<p>&lt;신 설&gt;</p>	<p>④ <u>그 밖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⑥ (개정안 제4항과 같음)</p>

- **안 제9조의2제2항(신설)**은 협의회 자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파악됨.
  - 서울시는 정보화사업에 대해 예산타당성 심사<sup>11)</sup>를 추진하면서 중복투자 등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있으나, 최근 디지털 트윈과 AI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공간정보가 현실과 가상공간을 연결하는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활용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러한 상황들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 필요성이 증대된 것으로 예상됨.
  - 다만, 협의회 자문으로 인해 기존 정보화사업 절차를 지연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각별히 신경 쓸 필요가 있겠음.

#### (4) 중복투자 방지(안 제10조)

- **안 제10조제2항**은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기존 내용과의 중복 방지를 위해 구축·관리계획에 대하여 “시장을 경유”하도록 한 것을 삭제하고, 시장과 협의(자치구·공공기관에 한함)하도록 단서를 신설하는 사항임<sup>12)</sup>.
  - 다만, 자치구 이외의 정부가 설립 또는 출연한 공공기관은 조례에 의무

11)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예산타당성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담당부서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서, 사업계획서, 산출내역서 등(이하 “심사요청자료”라 한다)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예산타당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 정보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정보화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제2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9조(중복투자의 방지)

② 관리기관의 장이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공공기관일 경우는 통보 전에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항<sup>13</sup>)에 해당하는 민간 법인, 학술연구를 위한 자 등으로 확대하는 것임<sup>14</sup>).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공간정보 제공) ① (생략)	제14조(공간정보 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자 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가 공간정보사업,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 법 제3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 ----- ----- ----- ----- -----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 13)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4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간행하여 판매 또는 배포하거나 해당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제35조의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공개가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유출이 금지된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제3항, 제35조의2제1항, 제35조의3, 제35조의4제1항 및 제35조의5제1항에서 같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학술연구, 공공복리 및 안전 등의 목적으로 공간정보를 활용하려는 자
- 14) 국회는 '24년 2월 공간정보를 주로 '생산' 하는 공간정보사업자 및 위치정보사업자에 더하여 ▲공간정보의 '활용' 수요가 높은 소프트웨어사업자나 ▲스마트시티·자율주행 등 신산업 분야 사업자와 학술연구를 위한 자 등에 대해서도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하여 활용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가결했음.

< 공개제한 공간정보 수요현황 >

순위	사업자 종류	비율	순위	사업자 종류	비율
1	소프트웨어사업자	19.15%	6	GIS 업종	6.38%
2	공간정보사업자	17.02%	7	건설 교통 사업자	6.38%
3	스마트시티 및 자율주행 업종	10.64%	8	드론 사업자	4.26%
4	위치정보사업자	8.51%	9	철도 및 항만 사업자	4.26%
5	정보통신사업자	8.51%	10	기타 사업자	14.9%

※ 자료: 국토교통부 ('23.4월 자체 수요조사 결과)

### <공간정보 보안분류 기준>

등 급	보안분류 기준
비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li> <li>•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공간정보</li> </ul>
공개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li> <li>•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li> <li>• 기타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li> </ul> <p>* 예) 3차원 좌표가 포함된 90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 위성영상, 3차원공간정보, 등고선과 표고가 포함된 1:1,000 이상 지도 등</p>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공개,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공간정보</li> </ul>

※ 자료: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6조

- 서울시는 개정된 법 시행('24.3.19.)에 맞춰 '24년 4월부터 민간 법인과 학술연구를 위한 자 등에게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해왔지만(검토보고서 붙임5), 조례에는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었음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6) 수수료(안 제15조 및 별표)

○ 안 제15조제1항은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15)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 별표에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는 대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을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수수료) ① 제14조에 따라 <u>공간정보</u> 를 제공 받으려는 자는 다른법령에서 <u>공간정보 수수료를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u>  ②·③ (생략)	제15조(수수료) ① ----- <u>공간정보</u> 를 제공 받으려는 자는 「 <u>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u> 」의 [별표 12]에 따른 -----  -----  ②·③ (현행과 같음)

- 서울시는 그동안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을 조례 별표로 동일하게 인용하여 수수료를 받아왔으나(검토보고서 붙임6), 지난 2022년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상 수수료가 인하되었음에도 조례에는 반영하지 않은 사항으로, 내용을 인용하기보다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을 직접 따르도록 한 것임.

○ 안 제1조(목적), 안 제3조(적용범위), 안 제8조(공간정보 표준 준수), 안 제9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는 그 의미에는 변동이 없으나 조례를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 -----.
제3조(적용 범위) 공간정보의 생산·관리·활용과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생산·관리·활용·유통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
제9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수집·생산하는 공간정보를 법 제28조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표준과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① ----- ----- 적합하도록 ----- -----.

15)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4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④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부터 복제 또는 출력한 자료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3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⑤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해야 하며,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한다)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8조(공간정보 표준 준수) ① 관리기관의 장은 <u>공간정보체계의 구축, 관리, 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에 있어</u> 법 제21조 및 제23조에서 정하는 <u>기술기준 표준</u> 을 따라야한다.  ② (생략)	제8조(공간정보 표준 준수) ① ----- <u>공간정보체계를 구축·관리·활용하거나 공간정보를 유통할 때는</u> ----- <u>기술기준과</u>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공간정보 표준 준수) ① ----- ----- ----- <u>유통할 때,</u> ----- ----- ----- ② (개정안과 같음)

### 다. 종합의견

- 이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과 서울시가 추진 중인 업무의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디지털도시국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적기에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법령이나 타 조례에 따라 규칙으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디지털도시국은 공간정보통합체계의 운영에 있어 단순 공간정보의 수집·저장·가공·분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활용성과 목적성에 대한 계획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자료의 정확성과 갱신 시기 등의 관리를 통해 신뢰성 있는 공간정보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관리기관의 범위에서 공공기관 삭제 (안 제2조제5호, 안 제10조제2항)
- 공간정보협의회 위원의 구성과 존속기한 명시(안 제9조의2)

VII.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363
----------	------------

제안일자 : 2024. 02. 25.

제안자 : 주택공간위원장

## 1. 수정이유

- 관리기관의 범위에서 조례상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공간정보협회의 위원의 구성과 존속기한 등을 명시함.

## 2. 수정의 주요내용

- 관리기관의 범위에서 공공기관 삭제 (안 제2조제5호, 안 제10조제2항)
- 공간정보협회 위원의 구성과 존속기한 명시(안 제9조의2)

#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5호 중 “자치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자치구”로 한다.

안 제8조제1항 중 “유통할 때는”을 “유통할 때,”로 한다.

안 제9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안 제10조제2항 본문 중 “수립하고”를 “수립하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자치구 또는 공공기관일”을 “자치구일”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u>는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5.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민간기관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 뜻은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 ----- ----- <u>자치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u> ----- ----- ----- ----- ----- ----- ----- ----- ----- ----- -----.</p>	<p>제2조(정의) (개정안과 같음).</p> <p>1. ~ 4. (개정안과 같음)</p> <p>5. ----- ----- ----- ----- <u>자치구</u> ----- ----- ----- ----- ----- ----- -----.</p>
<p>제8조(공간정보 표준 준수)</p> <p>① <u>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관리, 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에 있어</u> 법 제21조 및 제23조에서 정하는 기술기준 표준을 따라야한다.</p> <p>② (생략)</p> <p><u>&lt;신설&gt;</u></p>	<p>제8조(공간정보 표준 준수)</p> <p>① ----- <u>공간정보체계를 구축·관리·활용하거나 공간정보를 유통할 때는</u> ----- ----- <u>기술기준과</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의2(공간정보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② (생략)</p>	<p>제8조(공간정보 표준 준수)</p> <p>① ----- ----- ----- <u>유통할 때,</u> ----- ----- -----.</p> <p>② (개정안과 같음)</p> <p>제9조의2(공간정보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② (개정안과 같음)</p>

<신 설>

<신 설>

③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  
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  
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자격은 규칙으  
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④ 협회의 존속기한은 2  
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 설>

③·④ (생 략)

⑤·⑥ (개정안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10조(중복투자 방지) ①  
(생 략)

제10조(중복투자 방지) ①  
(현행과 같음)

제10조(중복투자 방지)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관리기관의 장이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간정보데이터베이  
스의 구축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을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  
-----  
-----  
----- 수립하고, -----  
-----  
-----

② -----  
-----  
-----  
-----  
----- 수립하여, -----  
-----  
-----

<단서 신설>

-. 다만, 관리기관이 자치  
구 또는 공공기관일 경우  
는 통보 전에 시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 ----- 자치  
구-----  
-----  
-----

③·④ (생 략)

③·④ (생 략)

③·④ (개정안과 같음)

##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그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을 “자치구”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서울특별시 공간정보통합체계”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체계를 통합 또는 연계하여 구축·운영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11. “도시기본공간정보”란 주소·경계·기반시설·지형지물 등 도시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공간정보로 시장이 정하는 주요 디지털 공간정보를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 범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생산·관리·활용과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를 “생산·관리·활용·유통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로 한다.

제6조 중 “한다”를 “하고, 관련 업무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관리, 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에 있어”를 “공간정보체계를 구축·관리·활용하거나 공간정보를 유통할 때,”로 하고, “기술기준”을 “기술기준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따라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표준과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을 “적합하도록”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공간정보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구축·관리·활용 등을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간정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1. 도시기본공간정보 선정 및 갱신에 관한 사항
2. 서울특별시 공간정보통합체계 운영 및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전검토 사항
4. 그 밖에 공간정보의 구축·관리·활용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협의회는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⑤ 협의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수립하고 시장을 경유하여”를 “수립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자치구일 경우는 통보 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외한다.이하”를 “제외한다. 이하”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자 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가 공간정보사업,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른”을 “법 제3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공간정보를 제공 받으려는 자는 다른법령에서 공간정보 수수료를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의”를 “공간정보를 제공 받으려는 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 12]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적용 범위) 공간정보의 생산  
· 관리 · 활용과 유통 등에 관하  
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  
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 관  
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  
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공간정보 표준 준수) ① 관리  
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의 구  
축, 관리, 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에 있어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서 정하는 기술기준 표준을 따라  
야한다.

② (생략)

제9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

정보체계를 말한다.

11. “도시기본공간정보”란 주소 ·  
경계 · 기반시설 · 지형지물 등  
도시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공  
간정보로 시장이 정하는 주요  
디지털 공간정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 생산 ·  
관리 · 활용 · 유통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  
-----.

제6조(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 --  
-----  
-----  
-----  
----- 하고, 관련 업무의 지정  
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공간정보 표준 준수) ① ----  
----- 공간정보체계를 구축  
· 관리 · 활용하거나 공간정보를  
유통할 때, -----  
- 기술기준과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

축·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수집·생산하는 공간정보를 법 제28조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표준과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축·관리) ① -----

-----

--- 적합하도록 -----

-----

-----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2(공간정보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구

축·관리·활용 등을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간

정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

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1. 도시기본공간정보 선정 및 갱

신에 관한 사항

2. 서울특별시 공간정보통합체계

운영 및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전검토 사항

4. 그 밖에 공간정보의 구축·관

리·활용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자격은 규칙

<신 설>

<신 설>

<신 설>

제10조(중복투자 방지) ① (생략)

② 관리기관의 장이 새로운 공간 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을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관리기관의 장(민간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관리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으로 정한다.

④ 협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⑤ 협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협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중복투자 방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수립하여, -----  
-----  
----- . 다만, 관리기관이 자치구 일 경우는 통보 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  
- 제외한다. 이하 -----  
-----  
-----  
-----.

다.

1. ~ 6. (생략)

④ (생략)

제14조(공간정보 제공) ① (생략)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자 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가 공간정보사업,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 제 3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5조(수수료) ① 제14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 받으려는 자는 다른법령에서 공간정보 수수료를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공간정보 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  
- 법 제3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  
-----  
-----  
-----  
-----  
-----  
-----  
-----  
-----  
-----  
-----  
-----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수수료) ① -----  
공간정보를 제공 받으려는 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 1 2]에 따른 -----  
-----  
-----

②·③ (현행과 같음)